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021. 5. 31.

개발자  
운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안내사항

- 본 자율점검표는 AI 기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준수 뿐만 아니라, 자사 기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AI 서비스 이외 분야 개인정보처리자도 점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유형·방식에 따라 구체적 이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고시의 세부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고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http://law.go.kr))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http://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참고

- 자율점검표 관련 상담,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로 문의 바랍니다.

## CONTENTS



### ◈ 개요 1

1. 추진배경
2. 활용대상
3. 성격
4. 구성

### ◈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원칙 3

###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

1. 총괄 흐름도 5
2.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흐름도 7
3.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9
  - ① 기획·설계 9
  - ② 개인정보 수집 11
  -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15
  - ④ 개인정보 보관·파기 20
  - ⑤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22
  - ⑥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24
  - ⑦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27
  - ⑧ AI 윤리 점검(상시) 29

### | 활용 안내사항 30

### | 부록

1. 용어설명 31
2. 국내외 주요 AI 윤리기준 현황 33
3.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34

# 개요

## 1. 추진배경

- ◆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sup>1</sup>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AI 기술·서비스의 개발·운영(이하 'AI 개발·운영'이라 한다) 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 ◆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자(이하 'AI 개발자·운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 2. 활용대상

-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포함)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갖는 AI 개발자·운영자 등
-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됨)

## 3. 성격

- ◆ **(상시점검표)** AI 개발자·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의 사전점검 또는 서비스 운영과정의 수시점검에 활용 가능한 자율점검표
- ◆ **(교육안내서)** AI 기술·서비스 분야의 업무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교육·컨설팅 등에 활용 가능한 안내서

1 **인공지능(AI)**: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서, ① 상황을 인지하고, ② 이성적·논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③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출처: 관계부처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 4. 구성

- ◆ AI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적법성·안전성·투명성·참여성·책임성·공정성
-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단계별(또는 상시)로 법령상 준수해야 할 의무<sup>2</sup> 또는 권장<sup>3</sup>하는 내용에 대한 점검항목(16개), 확인사항(54개)으로 구성
- ◆ 활용 안내사항: 점검표 활용방법 및 상담 문의처 안내 등



<sup>2</sup> 의무: 보호법령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위반시 벌칙(보호법 제10장)이 부과될 수 있음

<sup>3</sup> 권장: 보호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이를 준수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항

#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원칙

## 1.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기본방향

- ◆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AI 개발 시 활용되는 학습데이터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서비스 운영 중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음
  - ▶ 정보주체의 동의, 가명처리 등 **적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예측 가능하고 허용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
- ◆ (복잡성·불투명성)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우려
  - ▶ 개인정보 처리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에 대한 보장이 중요
- ◆ (자동화·불확실성)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지식·확률기반의 추론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처리함. 이를 활용한 자동화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 사회적 차별·편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중요하고, 이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처리 결과의 **공정**함을 고려할 필요



## 2.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 준수뿐만 아니라, 자율적 보호활동 및 윤리적 이슈 대응이 중요함
- 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보호 원칙(§3)을 기본으로, 자율적 보호활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윤리적 이슈 대응을 위한 「AI 윤리기준」(‘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반영하여,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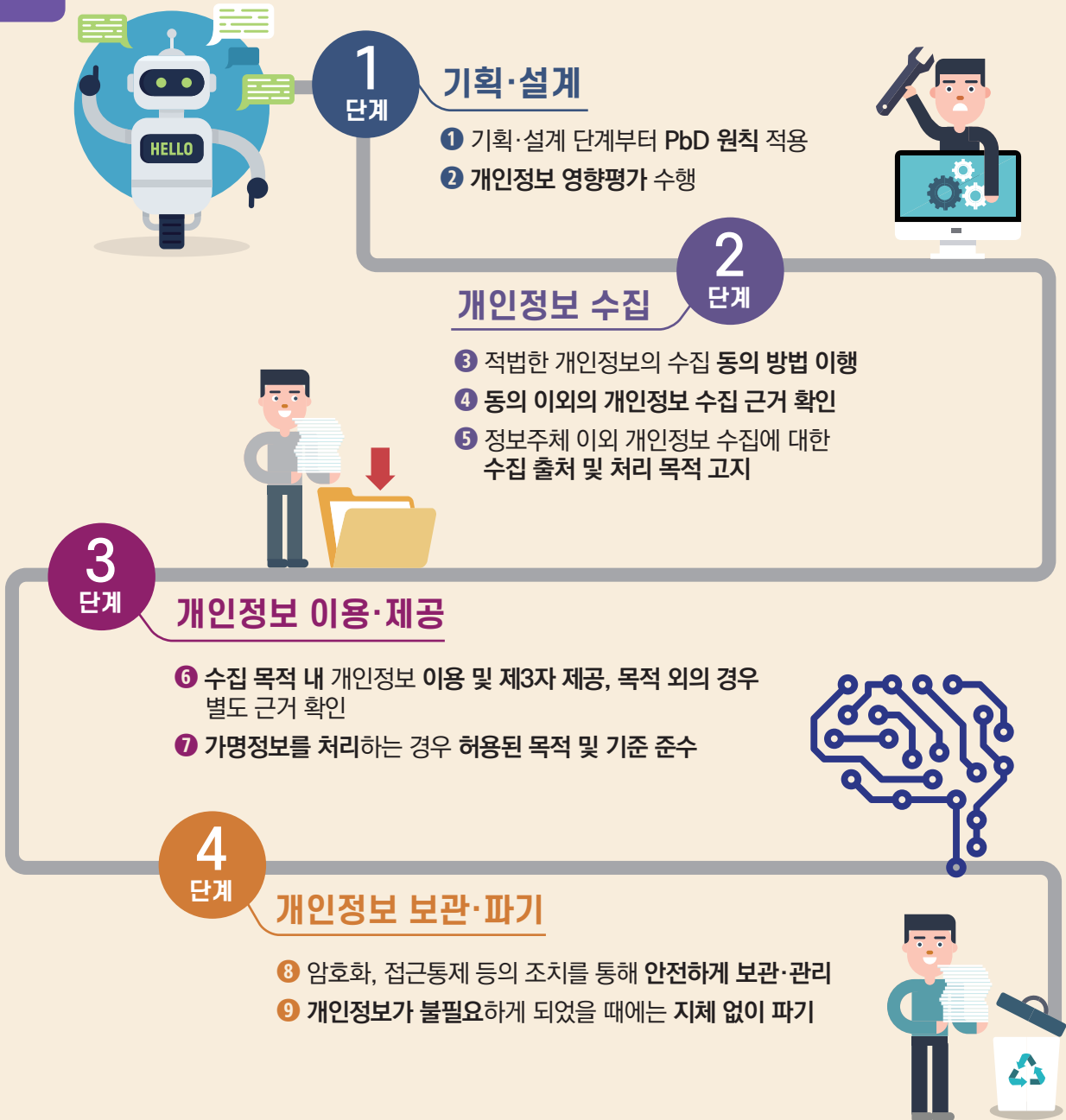
### 6대 원칙 설명

- ① **적법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의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 ② **안전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한다.
- ③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한다.
- ④ **참여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 ⑤ **책임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 ⑥ **공정성**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사회적 차별·편향 등 발생을 최소화한다.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1. 총괄 흐름도

단계별 점검







# 상시 점검

## 상시 5

### AI 서비스 관리·감독

- ⑩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교육 실시
- ⑪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관리사항 문서화,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수행



## 상시 6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 ⑫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투명한 공개
- ⑬ 이용자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이행
- ⑭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관계기관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 절차 마련



## 상시 7

###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 ⑮ 자율적인 보호활동 적극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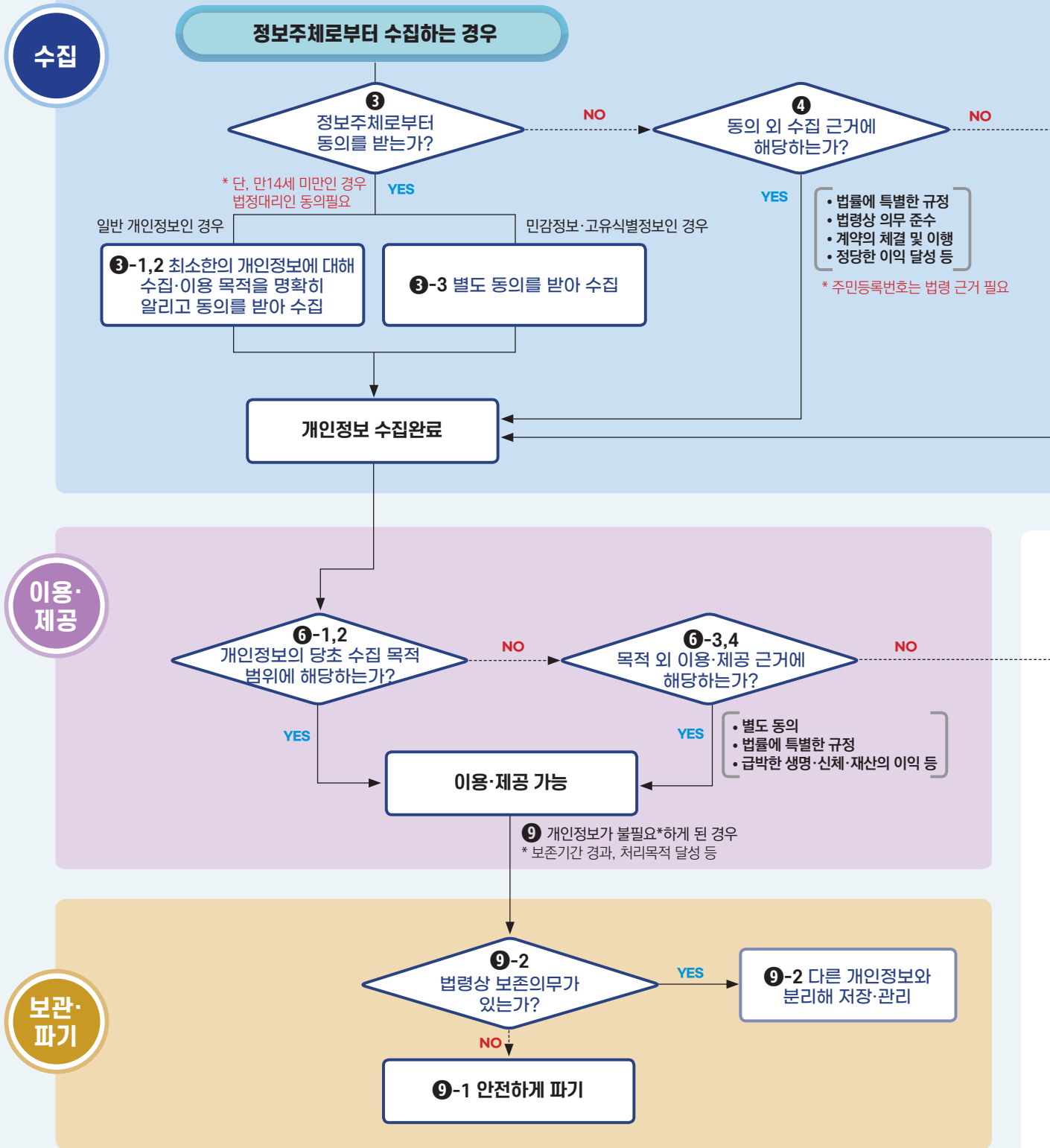
## 상시 8

### AI 윤리 점검

- ⑯ 윤리적 이슈 발생여부 지속 점검·개선



## 2.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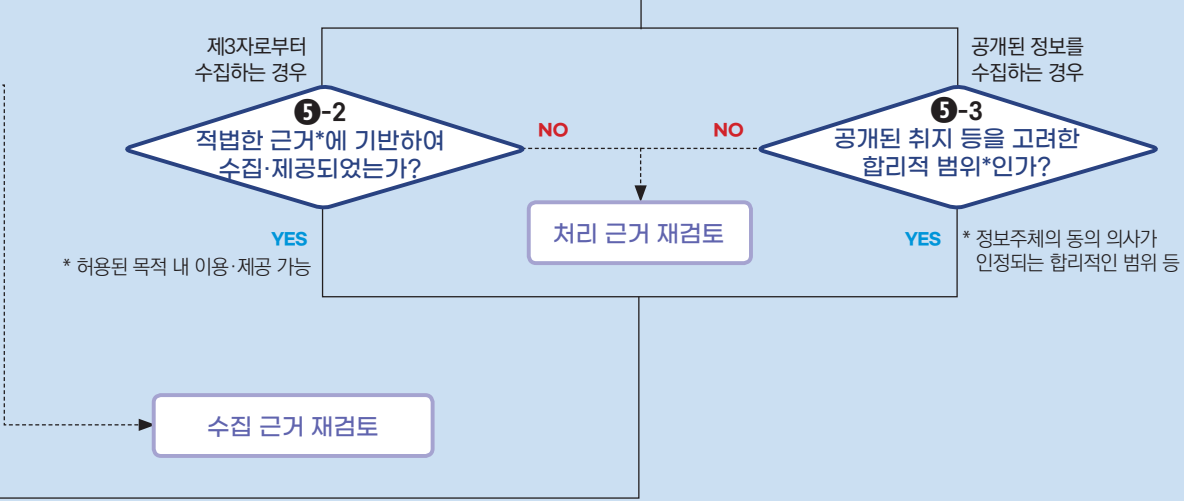
※ 흐름도 내 숫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점검항목 및 세부사항을 의미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점검내용을 참고.  
(예시) ⑥-2: '5번 점검항목의 확인2'를 의미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주요 흐름 및 판단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순서(선호관계) 및 연결성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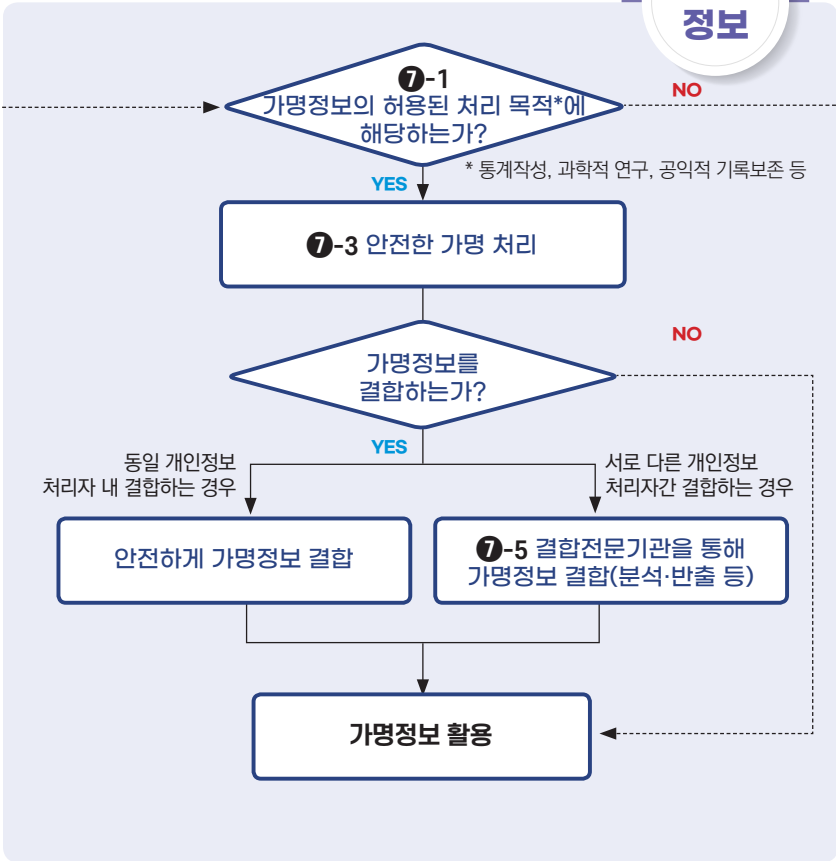


# 개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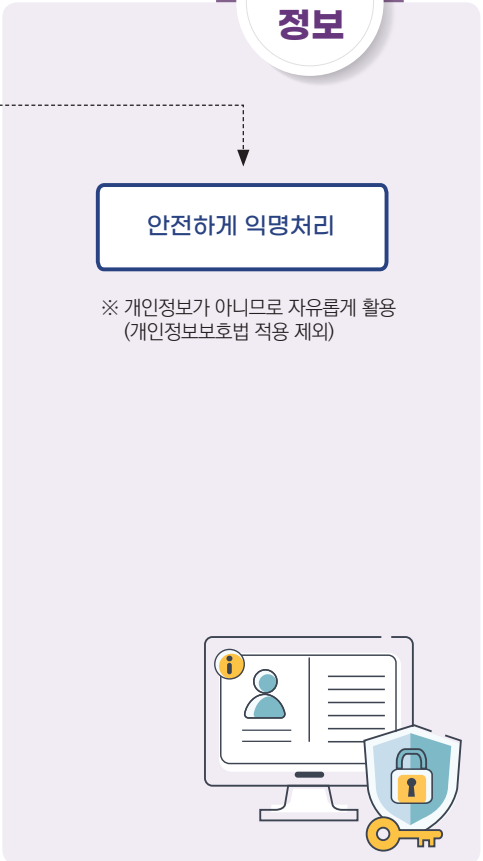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 가명 정보



## 익명 정보



### 3.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1 기획·설계

[YES / NO / 미해당]

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

권장

\*Privacy by Design(PbD):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임

▶ AI 개발·운영을 위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 모델링·학습·운영 과정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확인 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법§3⑥)

- PbD 적용 예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흐름의 전반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제외, 위험·침해요인 분석·제거, 암호화 등 안전조치 적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

확인 2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법§3⑥,⑧)

-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법 제3조, PbD 원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 지침’) 제4조 등



참고사항

1. PbD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① 수집·이용하려는 전체 데이터 현황 파악 → ② 개인정보 항목과 유형(식별자, 속성정보 등) 분석 → ③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근거(동의 등)와 활용 방식(가명처리 등) 결정 → ④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작성”을 사전에 수행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침해요인 분석, 대안 마련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2. 사전 위험분석, 안전성 점검, 법령 해석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질의 가능
  -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등
3.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Privacy by Design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20.12)」 참고

## 2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안전성** **적법성**

[YES / NO / 미해당]

공공: **의무**

민간: **권장**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 AI 기술의 특성상 개발·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AI 서비스·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 확인 1


의무대상(법§33, 영§35)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영향평가 의무대상: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그 규모가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0만명 이상의 시스템 연계,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이거나, 영향평가 이후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영§35)

### 확인 2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법§33⑧)

\* AI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AI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영향평가 수행·개선을 통해 침해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음

 관련 규정: 법 제2조 제6호, 제33조, 영 제35조 ~ 제3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



###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이하 ‘해설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12)」 등 참고

## 2 개인정보 수집



[YES / NO / 미해당]

3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적법성**

인무

- ▶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항목·처리목적,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리고, 정보주체의 자율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확인 1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법§16,§22,§39의3③)

- 개인정보는 필수·선택 동의로 구분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 마케팅 광고에 대한 동의: 상품의 홍보, 판매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받아야 함

###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법§15,§22,§39의3)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함

[AI 분야 적용 예시] “AI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충분히 이해·예측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의미, 개인정보 이용 범위·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만약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인지 등을 확인하여 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점검항목 ⑥ 참고),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허용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활용 가능(점검항목 ⑦ 참고)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예시>

- 개인정보 수집항목: “OO SNS 대화정보”와 같이 이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수집·이용 목적: “OO 서비스의 챗봇 알고리즘 개발(학습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보유·이용 기간: OO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O개월 보관·이용  
다만,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이용 가능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잘못된 동의 예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괄적인 수집·이용 목적 등을 포함시켜 링크를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동의로 갈음하는 방식

**확인 3**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법§23,§24)

\* 민감정보(법§23, 영§18): ①사상·신념, ②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정치적 견해, ④건강, ⑤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⑥유전정보, ⑦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⑧바이오정보(특징정보), ⑨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법§24, 영§19): ①여권번호, ②운전면허번호, ③외국인등록번호 등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또는 헌법기관 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처리가 불가능함(법§24의2)

**확인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법§22,§39의3④)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에게서 수집할 수 있음

**확인 5**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법§39의3⑤)

-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지를 하는 경우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함

 관련 규정: 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9조의3, 영 제17조 ~ 제19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표준 지침 제12조 ~ 제13조 등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2)」,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2)」 등 참고

# 4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적법성**



▶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한다.

### 확인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 개인정보처리자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법§15①2)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법§15①3)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15①4)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15①5)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15①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법§39의3②1)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39의3②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39의3②3)

### 확인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⑦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법§28의2 등)

- 이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점검항목⑦”을 참고

관련 규정: 법 제15조, 제28조의2, 제39조의3 등



####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2)」,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등 참고



# 5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적법성** **참여성**



▶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확인 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법§20)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성된 정보는 제외함(해설서 135쪽)

**확인 2**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법§3, §17, §71 등)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하고, 허용된 목적 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함.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확인 3**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법§3, 표준지침§6③,④)

-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개 의도·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이용 가능
- ※ 법 위반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 정보주체 권리, 공익성 등에 대한 비교 형량을 통해 판단 가능(참고: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관련 규정:** 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71조, 표준 지침 제6조 등

##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133~136쪽),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등 참고

### 3 개인정보 이용·제공



[YES / NO / 미해당]

6

AI 개발·운영 수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절한 근거가 있는가? **적법성**

인무

▶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가능하다. 만약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목적 내 이용·제공

확인 1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법§15,§17)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체결·이행 등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할 수 있음

확인 2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법§15③, §17④)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서비스 개선 목적의 AI 개발·고도화에 이용하는 경우] 특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의 개선(고도화 등) 목적으로 AI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정보주체의 예측이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

## 목적 외 이용·제공

**확인 3**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법§18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더라도 목적 외 이용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추가적 동의 필요


**확인 4**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18②)

- 법률에 특별한 규정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확인 5**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법§28의2)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구체적 사항은 점검항목⑦ 참고)

 관련 규정: 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의2, 제58조의2, 영 제14조의2 등



### 참고사항

1.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2)」 등 참고
2.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를 의미)는 법의 적용이 제외됨(법§58의2)

# 7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적법성** **안전성**

**인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어려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목적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재식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확인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법§28의2①)

- 이하 “확인사항 2~8”의 가명정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전에 명확한 점검 필요
-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함(법§2·8)

[AI 개발·운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 일반적으로 AI 기술개발(모델링·학습·시험 등)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므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AI 관련 서비스 운영 자체를 과학적 연구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서비스 운영 시 기능 개선,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개발·실증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타인의 가명정보를 서비스 운영에 직접 활용(공개·제공 등)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추가적 동의를 받거나 익명처리하여 활용

**확인 2**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법§37)

- 정보주체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법§28의7),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해설서 383쪽)

**확인 3**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법§2·1·다, 법§2·1의2)

-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추가 정보 없이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AI 학습데이터의 가명처리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AI 학습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수반되므로 개인식별·속성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AI 기술개발(학습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가명처리의 적정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데이터 유형에 따라 현 기술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가명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고, 적정성 검토 후 문제 발견 시 추가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예시) SNS 대화 데이터의 경우 대화 발화자의 식별정보\* 외에도 대화내용에 포함된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도 가명처리 필요

\*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의 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17쪽) 참고

**확인 4**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법§28의2②)

- 이 경우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외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명칭, 종류, 형태나 내용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해설서 222쪽)

**[AI 개발 관련 가명정보의 공개 제한]**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 중 누군가는 공개하는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가명정보의 공개는 사실상 제한됨(해설서 224쪽)

⇒ 불특정 제3자(공개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4쪽)

⇒ 가명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목적의 합법성, 재식별 금지 등 책임은 제3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해설서 223쪽)

**확인 5**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법§28의3)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야 함

**확인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법§28의4)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법§29, 영§30, §48의2) 뿐만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관련 기록(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가명처리 항목, 가명정보 이용내역, 제3자 제공시 제공받은 자 등)의 작성·보관 등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영§29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참고)

**확인 7**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법§28의5)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전체 매출액의 3%이내), 형사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법§28의5①, §28의6, §71)

**확인 8**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법§28의5②)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75)



**관련 규정:** 법 제2조 제1호·제1호의2, 제28조의2 ~ 제28조의7, 제29조, 제71조, 제75조, 영 제29조, 제29조의2 ~ 제29조의6, 제48조의2 등

**참고사항**

1.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상 의무사항(안전조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법 제28조의7에 따라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자세한 사항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등 참고

## 4 개인정보 보관·파기



8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안전성**

[YES / NO / 미해당]

의무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수행하여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한다.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암호화,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확인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법§29)

-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확인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법§29, 영§30)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5, §6, §8,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4, §5 참고

**확인 3**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법§29, 영§30, §48의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6 참고

관련 규정: 법 제29조, 영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4조 ~ 제12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3조 ~ 제8조 등



### 참고사항

- 안전조치 관련 고시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형, 처리방식, AI 기술·서비스 특성에 따른 침해 위험을 고려하여 추가적 보호조치의 노력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별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12)」,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12)」,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20.12)」 등 참고

## 9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안전성

인무

▶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회원 탈퇴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복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파기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확인 1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법§21, 영§16)

-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인쇄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등을 통해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여야 함
- 다만,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 (법§28의 7)

확인 2


다른 법령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법§21)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함

확인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법§39의6, 영§48조의5)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됨

 **관련 규정:** 법 제21조, 제28의7,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6, 영 제16조, 제48조의5 등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2)」,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2)」 등 참고



## 5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YES / NO / 미해당]

10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책임성**

인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발자 등 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확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법§28, §31)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확인 2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법§28)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특히, 교육 내용에 AI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장



관련 규정: 법 제28조, 제31조, 표준 지침 제15조 등



참고사항

1. 본 자율점검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11)」 등을 참고하여, 직원의 고의·실수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노출, 오남용 사례의 내부 공유를 권장함

# 11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책임성 안전성

**의무**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안전조치,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화하고, 수탁자를 교육·감독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한다.

**확인 1**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법§26, 영§28)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계약서 등)에 포함시켜야 함


**확인 2**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법§26, 영§28)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내용과 위탁받은 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하여야 함

**확인 3**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법§26, 영§28)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함

 **관련 규정:** 법 제26조, 영 제28조, 표준 지침 제15조 등

 **참고사항**

1.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에 본 자율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음
2.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12)」 등 참고

## 6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YES / NO / 미해당]

### 12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투명성**

인무

▶ AI 서비스의 경우 작동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확인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법§30,영§31)

\* 개인정보 처리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책임자, 고충처리 부서, 정보주체 권리행사 안내, 자동 개인정보 수집 장치(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등

확인 2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법§30,영§31)

• 명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하되, 글자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관련 규정 :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지침 제18조~제21조 등



참고사항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공개와 정보주체의 동의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사항을 처리방침에 포함시켜 링크만 제공하여 동의로 갈음하지 않도록 유의
2. 구체적 사항은 해설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20.12)」 등 참고
2. 유사업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사례를 참고

# 13

##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참여성



▶ AI 기술의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알기 어렵거나 결과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행사요구의 이행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한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헌법에 따라 보장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sup>4</sup>에 해당하므로 침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확인 1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법§3,§4,§35~38, 영§41)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AI 기술·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개인정보를 별도로 식별·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정보주체의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대안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해외에서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이외에 AI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추세

[AI 관련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응 예시] AI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복잡성·불투명성 등 특성으로 인해 AI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EU GDPR<sup>5</sup>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존재를 정보주체에 고지, 그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 및 반대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확인 2

####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법§30)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관련 규정:** 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영 제41조~제44조, 표준 지침 제31조~제34조, 제44조 등



#### 참고사항

1.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요건을 각 조항(법§35~37)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2.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 등 참고

4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5 ·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 14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책임성** **안전성**



▶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확인 1**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법§34, §39의4)

- AI 서비스의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

**확인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법§34, §39의4, 영§39, §48의4)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지위에 따라 신고대상(유출건수), 정보주체 통지시기 등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대응 매뉴얼에 반영

구분	신고대상(유출건수) 및 시기 등
개인정보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명 이상 유출 시 지체 없이(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조치결과를 개인정보위·KISA에 신고</li> <li>• 관련 규정 : 법§34, 영§39, §40, 표준지침§26 등</li> </ul>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출된 경우 유출규모와 관계없이 24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위·KISA에 신고</li> <li>• 관련 규정 : 법§39의4, 영§48의4 등</li> </ul>

**확인 3**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법§34, §39의4, 영§40)

-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항목, 유출시점·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 규정:** 법 제34조, 제39조의4, 영 제39조, 제40조, 제48조의4, 표준 지침 제25조~제29조 등

### 참고사항

1.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12)」 등 참고
2.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개인정보유출·침해신고” 참고

## 7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15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YES / NO / 미해당]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권장

▶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확인 1**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법§3)

-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임

**확인 2**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법§3)

- 이용자에게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등을 알기 쉽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확인 3**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법§3⑦)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여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함

**확인 4**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법§3⑥)

- 개인정보처리자는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확인 5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법§3⑥, §3⑧)

- AI 서비스·제품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소통체계를 갖추고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관련 규정: 법 제3조 제6항, 제7항, 제8항, 표준 지침 제4조 등



참고사항

1. AI 개발·운영환경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개발·적용을 권장함

\* 국내·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PET(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 참고 가능

2. 국내·외 AI 기술·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례 등 주요 이슈 참고

3. 자율규제단체 등 관련 분야의 단체를 통해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공유

## 8 AI 윤리 점검(상시)



[YES / NO / 미해당]

# 16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공정성**

점검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사회적 차별, 편향 등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확인 1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 AI 기술개발 및 서비스의 기획·설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확인 2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 AI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사회적 차별·편향 등 이슈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에 개선해야 함

확인 3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확인 4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 AI 학습데이터의 편향성은 서비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여 데이터로 인한 윤리적 이슈 발생을 최소화함



참고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참고
2. 사회적 차별 등 윤리적 이슈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추후 발간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활용 안내사항

1.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사전점검용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고, AI 관련 산업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AI 서비스 이외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도 본 점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의무·권장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유형·방식에 따라 구체적 이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고시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참고

\*\* 아래 웹사이트 참고

3. 자율점검표 관련 상담,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로 문의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과 AI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최신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정책·법령/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지침자료)

5. 국내·외에서 AI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차별·편향 등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 중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임

## 부록

### 용어 설명

- ◆ **인공지능(AI)**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서, ①상황을 인지하고, ②이성적·논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③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 ◆ **인공지능(AI) 서비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
-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기획 단계부터 파기 단계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  
①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②초기 설정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③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한 설계, ④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업기능의 균형, ⑤개인정보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 ⑥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가시성 및 투명성 유지, ⑦이용자 프라이버시 존중 등 7대 원칙으로 구성
-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정보(영 제18조)
- ◆ **고유식별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영 제19조)
-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보호법 제2조 제3호)

-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보호법 제2조 제5호)
-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 ◉ **가명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 **결합전문기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 ◉ **재식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 ◉ **바이오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영 제18조 제3호)
-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
-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한 것
-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의 약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하고 보호를 강조하여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구현하는 기술

## 국내외 주요 AI 윤리기준 현황

### 국내외 AI 윤리 논의 동향

- 주요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 등은 AI에 대한 윤리적 권고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논의 중

####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

구분	발간기관	제목(발간연도)	
국외	국제기구	OECD, G20	인공지능 원칙(2019)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2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서(2018)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침(2020)
		국가표준기술연구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4원칙(2020)
	EU	유럽집행위원회	신뢰할만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2019)
		EDPS, CNIL, Garante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안(2021)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2020)
			인공지능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제안사항(2019)
	독일	정보보호감독청	인공지능 7개조 원칙(2019)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챗봇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권고사항(2018)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2020)
		앨런튜링연구소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의 이해 지침서(2019)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원	인공지능 8대 윤리 원칙(2019)
	중국	국가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	인공지능 윤리적 보안 위험 방지에 대한 사이버보안 실행 가이드 (2021)
		차세대인공지능관리특별위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2019)
	일본	내각관방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원칙(2019)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 프레임워크(2018)
	국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2019)
네이버			네이버 AI 윤리 준칙(2021)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2018 제정, 2019·2020 개정)

※ <https://repository.sapi.co.kr>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AI 윤리원칙 인덱스>, <https://kaiea.org/research>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연구자료실> 등의 정보 참고

※ EU집행위원회는 'AI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 수립 규정'(AI 법)을 제안('21.4)하는 등 해외 주요국은 AI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연구를 진행 중

##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 10대 핵심요건

### 1. 3대 기본원칙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원칙

◈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 ① 인간 존엄성 원칙

-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 2. 10대 핵심요건 – 기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요건

◆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는 10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한다.

### ① 인권보장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② 프라이버시 보호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다양성 존중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침해금지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공공성

-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⑥ 연대성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 ⑧ 책임성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⑨ 안전성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 또는 침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그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⑩ 투명성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발 행: 2021년 5월 31일  
발 행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 본 자율점검표(버전 1.0)는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및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AI 서비스 분야의 사생활 침해 예방조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http://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